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3-1-10

규정번호 3-1-10
제정일자 2002.5.27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정보관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정보화 관련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② “정보자원”이라 함은 우리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정보기기·정보기술·정보화분야의 예산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교무처장·산학협력처장·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18.12.1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보직변경시는 후임자가 자동승계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24.)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이 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24.)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자원의 획득·배정·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사업에 관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24.)

제7조(의결)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7.24.)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02.27.)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11> <생략>

<12>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①, 제4조③, 제5조, 제6조5호,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3>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8> <생략>

<9>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정보관리센터과장”을 각각 “정보관리팀장”으로 한다.

<10> - <49> <생략>

부 칙(학칙) <2012.6.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 <생략>

<4>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5> - <13>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2> <생략>

<13>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14>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5호, 제8조제2항)